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 시책 강구〉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60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개 요	1
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4

I. 개 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9. 4.

다. 회 부 일 : 2024. 9.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폭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u>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u>	<u>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 등) ① -----</u> <u>-----지구온난화-----</u> <u>-----</u> <u>-----</u> <u>-----</u> <u>-----</u> <u>-----</u>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제37조의3</u>(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제37조의2제2항</u>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3. (생략) ③ ~ ⑤ (생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37조의4</u>(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37조의3제2항</u>----- -----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 주요 검토사항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2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¹⁾)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로서 여성과 어린이 등 7개 분야(대상)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제37조의2 신설)은 이에 더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법 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

1.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제32조)	2. 노인의 건강증진(제33조)
3. 장애인의 건강증진(제34조)	4. 학교 보건의료(제35조)
5. 산업 보건의료(제36조)	6. 환경 보건의료(제37조)
7. 식품위생·영양(제38조)	8. 그 외 질병관리청장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제37조의2)

1)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학교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환경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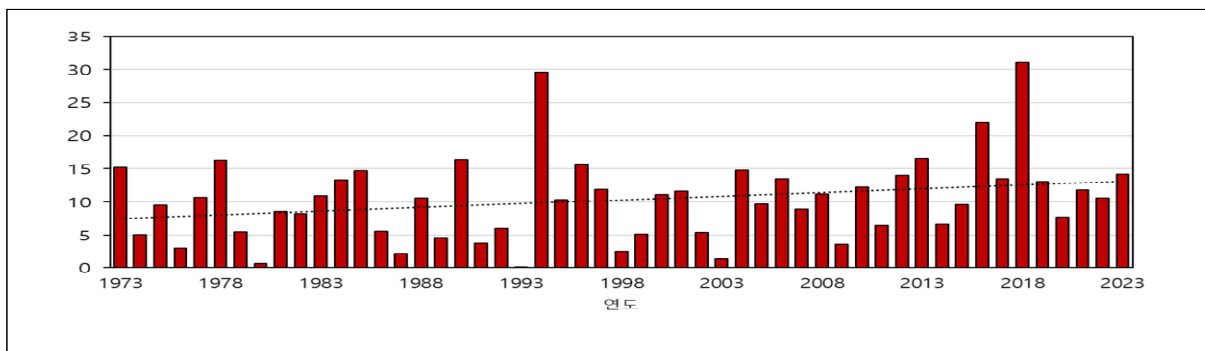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8조(식품위생·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입법배경을 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인간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고온 노출에 의한 생리학적 문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 가뭄·홍수·폭염·폭풍우 등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에 의한 직접적인 외상과 사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생태계의 변화, 음식과 물의 질 변화와 매개체의 분포 변화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난 109년간(1912~2020) 폭염일수를 분석한 결과(기상청), 최근 10년(2011~2020) 폭염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²⁾,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폭염일수(1973~2023년) >



*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참고로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078명에서 2023년 2,81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폭염일수가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2018년의 경우 4,526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한 바 있음.

2)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폭염일수는 2023년에 평균 약 14.2일며, 폭염이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2018년은 31일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우 기후변화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건강피해에 대한 적응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기후위기 적응’(제2조제11호)을 “기후위기에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38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0조에서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을 고려하여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실제로도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건강 보호 등이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22 ~ '26) 주요 지방자치단체 추진방향 및 과제 >

구분	추진방향	추진과제
서울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의 취약성을 제고하여 기후 관련 질환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	· 기후변화 건강위험 적응 ·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강화 · 폭염 취약 시민 건강 보호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
부산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악화 선제적 대응	· 건강영향 감시·평가 체계 마련 · 건강 취약집단 보호 환경 조성 ·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감염병 관리 강화
대구	○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밀착형 건강도시 조성	· 폭염 적응 및 감염병 적응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건강관리
인천	○ 감염병 피해 저감을 위한 건강 관리	· 감염병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 · 기후변화 적응 지원
광주	○ 기후변화 대비한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 건설	· 기후변화 대비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강화 · 기후변화 에 대한 우선적 건강보호 · 폭염 안전망 및 경감대책 추진 · 폭염 및 도시열섬 대응기반 마련
대전	○ 기후 위기 속 맞춤형 건강 관리와 공의료 기능 강화로 건강복지 증진 및 신종감염병 대처로 시민 건강피해 최소화	· 질병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 마련 · 기후변화 건강 보호 · 건강 증진 확대
울산	○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보호기반 강화	· 기후변화에 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 기후변화 보호기반 강화 · 대기오염 피해저감 관리체계 강화 · 환경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진단체계 강화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1